

대학내 교수성희롱의 성차별적 특징: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조주현**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교수성희롱이 어떻게 단순히 잘못된/서투른 성적 표현이 아니라 성차별이 되며 대학내 여성의 주변적 위치를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분석은 세 대학에서 발생한 교수성희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과 관련 자료에 근거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후, 각 단계마다 사건관련자들이 성희롱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해석하고 그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례에서 성희롱 피해자는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성차별의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었으나 학생과 교수의 차등적 권력관계가 매 단계마다 성희롱을 성차별로 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논리를 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례는 대학내 성평등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일 때 성희롱은 성차별과 무관한 것으로 인지되고 그 결과 성희롱은 현재의 성별 위계 구조를 유지,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음을 보여주었다.

* 본 연구는 조주현·장승욱·정현희(2003)의 교육부 연구과제인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3-일-07) 중 연구자가 맡은 부분의 일부를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주제어: 성차별, 조건형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 제도적 권력, 가부장적 권력

1. 문제제기

한국사회에 성희롱¹⁾이란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서울대 S 교수성희롱사건(1992-1998)을 통해서이다. 이 사건은 사건의 발발부터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육년간 지속되었는데 재판진행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 성희롱인가 하는 점이었다. 통상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피해자간에 첨예한 시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기 제시한 두 개의 판본을 두고 어떤 기준에서 누구의 시각으로 성희롱을 판단할 것인지가 성희롱 문제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서구에서는 이른바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1980년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Gutek, 1985; MacKinnon, 1979), 1991년부터 실제로 재판에 적용되기 시작했다(Abrams, 2001: 209). 반면에 한국에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 처음 소개된 것은 여성계가 서울대 S교수성희롱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희롱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부터이다(조순경, 1995).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2005년,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786호, 제3조의4).

판결문을 통해 성적괴롭힘(성희롱)은 “합리적 여성”의 입장이 아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W조교가 제시한 성희롱의 내용은 성적으로 노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94나15358).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성희롱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1999년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년 시행)에 성희롱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그동안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 및 예방교육의 근거법이었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7786호)에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 제정 이후 각 사업장과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매해 의무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은 이에 더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칙을 마련하고 고충처리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이렇게 법률제정과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그리고 성희롱 관련법 제정 이후 표면화된 교수성희롱사건들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구성원들 사이에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성희롱이 무엇이며, 왜 금지되어야 하며, 나아가 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 후 직장인의 87.8%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정작 무엇이 성희롱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97.7%가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자·김인순, 2001: 58-61). 관련법규나 피해처리절차, 예방행동 등 형식적인 절차는 인지되고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정 언행이 금지되는지가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연구에 의하면 성희롱 규제 항목에 어떤 것들

이 있는지를 아는 데는 성별 차이가 없으나 그것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희롱을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성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마경희, 2002). 성희롱 예방교육이 8년 이상 진행된 최근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대학내 고충처리창구의 상담원들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부족이 예방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48%),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35.7%), 즉 성별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고취가 예방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으로 꼽고 있다(박성혁 외, 2007:118, 135-6).

대학공동체가 성희롱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희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성희롱을 잘못된/서투른 성적 표현으로 보는 우리사회의 통념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희롱을 성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보게 되면 그 행위의 경미함 혹은 심각함의 정도가 관건이 되고 그 결과 각자의 위치와 경험에 근거해 경미함을 혹은 심각함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어있는 성폭력의 행위들이 비교의 기준이 되면서 “그 정도”의 성적 행위에 교수 해임/징계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하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희롱의 초점은 성적 행위뿐 아니라 성적 차별에 있다. 성희롱은 성폭력이어서 규제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성폭력이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된다.²⁾

2) “성희롱”은 통상 “성폭력”과 혼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희롱의 범위 중에 강간과 강제추행은 실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성희롱의 범위는 성폭력으로, 그 외의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성희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폭력”은 행위의 유형보다는 규제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성희롱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의 침해뿐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고,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된다(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2003: 16-18).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본다는 것은 성희롱을 개인 간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집단 간의 불평등의 문제로 본다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이 잘못된/서투른 성적 표현이 아니라 성을 소재로 한 사실상의 권력 남용이고 그 권력남용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단지 여성이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두 사람 사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별 집단 간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녀차별이 된다. 성희롱이 차별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성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 행위의 경미함이나 심각함의 정도를 각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성희롱 유무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성희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우리사회의 통념이 반영하듯이 성희롱이 어떻게 남녀차별이 되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내 성희롱은 그간 꾸준하게 법령을 제정·정비해왔고 자체적으로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여 예방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상담 활동을 벌여왔지만 현재까지도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이(89%) 상담 및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했지만 독립기구(11%)가 아니고 대학행정기구(60%)나 학생상담기구(29%)의 부속기구로 설치되어있어 위상이 정립되어있지 못하며, 상담업무만 담당하는 상담원들은 5.3%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접수 건수가 응답 대학의 56.7%에서 연간 5명 이하로 낮게 나타나며, 이 접수 건수 중 조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건수는 없거나(59.5%), 연간 평균 0.5건 미만인 경우(33.5%)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담원들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 교수-학생간 사건(41%)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박성혁 외, 2007). 법 제정 이후 형식과 절차는 빠르게 수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담 및 고충처리 기구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신뢰가 형성되어있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이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의

통합의 문제이며 그 근원에 성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성희롱이 어떻게 남녀차별이 되는지를 2003년도 세 대학의 교수성희롱 사례를 통해 그 사회적 담론 형성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이해하려는 시도이다.³⁾ 연구분석을 통해 교수성희롱이 어떻게 피해 여학생을 통해 대학내 여성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내 성차별 구조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교수성희롱의 예방교육과 적절한 처리가 대학공동체의 재통합과 대학내 성평등의 정착에 직결된 문제임을 이해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⁴⁾

성희롱이란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린 팔리(Lin Farley, 1978)에 의해 직장여성이 겪는 성적 괴롭힘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소개된 후 현재까지 다양한 법적, 이론적 논의를 거쳐 왔다.

맥키논(MacKinnon, 1979)은 성희롱을 성차별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이후 성희롱을 성폭력관련 법규가 아닌,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 맥키논에 따르면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자 현실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3) 2003년도 사례로 비교적 오래된 자료이나 성희롱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희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여전히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했다.

4) 이론적 배경에서는 한국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성희롱”에 대한 법적, 이론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사례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여성은 그 남성의 욕망에 순응하는 형태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 같은 사회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성적 대상으로서의 종속적 위치를 짐하게 된다. 성희롱이 성차별이 되는 것은 모든 여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근거해 여성으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침해하는 것은 그 여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여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MacKinnon, 1979: 174-184). 맥키논은 여성은 여성 섹슈얼리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은 경멸적인 함의를 지니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성희롱이 차등적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권력이 조직 내 위계에 근거한 제도적 권력일 뿐 아니라 가부장적 권력을 뜻하는 것임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성차별임을 밝힐 수 있었다.

맥키논 이후 성희롱 관련 논의는 제도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을 양축으로 해서 법적 논의와 이론적 논의로 분화,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먼저 법적 논의의 전개를 보면, 1980년에 연방기구인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공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1964년 제정/1991년 개정)에 근거해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는 지침안을 마련했는데 이 지침안은 이후 교육기관 내 성희롱규제 지침안 마련의 준거가 됐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성희롱 정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행위의 요구, 그리고 기타 성적 특징을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것이 (1)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그런 행동을 수용해야 개인의 고용이 보장될 때, (2) 그런 행동의 수용 여부가 고용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때, (3) 그런 행동을 통해 부당하게 개인의 작업능력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불쾌한 작업환경을 만들려고 하거나 만들었을 때

성희롱으로 간주된다”이다(Hobson and Hobson, 2002: 44). 여기서 “원하지 않는”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행위의 대상자가 원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관점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뜻한다. 또한 (1)과 (2)는 제도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조건형 성희롱을 말하고 (3)은 가부장적 권력만으로도 성희롱이 가능한 환경형 성희롱을 말한다. 따라서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제도적 권력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권력을 인지하고 있고 그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내 민권국(U.S. Department of Education OCR) 역시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교육법 제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1972년 제정)에 근거해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는 지침안을 마련했다. 민권국은 교육기관 내 성희롱을 조건형 성희롱과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조건형 성희롱(Quid Pro Quo Harassment)은 “교육기관의 피고용인(교수)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행위의 요구, 혹은 기타 성적 성격을 지닌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행동을 학생이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교육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은 “성희롱 행위가 충분히 심하고 지속적이고 만연해서 학생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불쾌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2001: 352).⁵⁾

5) 조건형 성희롱은 대학의 교수가 행위자인 경우이다. 교수가 학생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하고, 교수의 접근에 대한 수용여부가 학생에 대한 학문적 결정(시험점수, 학점, 논문통과, 추천서 등)을 하는데 이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에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에는 교수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 혹은 제삼자가

조건형 성희롱과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으로 대학내 성희롱을 정의한 교육부 민권국의 지침이 미국의 대학내에서 힘을 얻게 된 것은 이후 수많은 법적 개정을 통해서였다. 1979년에 미국 대법원은 교육법 제9조의 위반을 근거로 개인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1980년에는 조건형 성희롱이 교육법 제9조가 규정한 성차별의 형태라고 판결함으로써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학생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1992년의 대법원 판결로서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도 교육법 제9조가 규정한 성차별의 형태이며 대학은 교육법 제9조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조건형 성희롱뿐만 아니라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도 재정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은 크게 증가하였다(Hobson and Hobson, 2002: 44-49).

이렇게 되자 미국의 대학들은 성희롱에 대해 규제일변도로 정책을 강화시키게 되었다.⁶⁾ 특히 1992년의 대법원 판결이후, 수업 중 교수의 발언들이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으로 쟁점화 되자 이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부각되었고 대학의 “일방적” 징계절차에 대한 교수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Patai, 1998; Rophie, 1994). 그러자 1998년에 대법원은 대학의 책임자가 성희롱에 대해 “고의로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그 대학은 성희롱피해학생에 대해 재정적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의 전형적인 예는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이 원치 않는 성적 언급이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며, 그 성적 언급이나 행위가 학생의 학문적 성취를 방해하고 학생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불쾌하게 간주되는 경우이다(Hobson and Hobson, 2002: 42).

6) 예를 들어, 인디애나대학의 경우를 보면 교수윤리지침을 통해 수업,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회 등 권력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교수와 학생 간에는 두 사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낭만적 관계나 성적 관계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www.iusb.edu/~acadaff/handbooks/student.html#Faculty-Student%20Relations>

결함으로써 대학이 재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학내 성희롱에 대해 규제일변도로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U.S. Supreme Court, 2001). 결국 대학내 성희롱에 대한 미국 법규의 지난 20여 년 간의 변화를 요약하면, 성희롱의 적용범위가 가해 남교수와 피해 여학생의 경우에서 시작하여, 동성간, 동직급간, 그리고 학생이 교수에게 하는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성희롱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성희롱 발생에 대해 대학이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성폭력범죄를 구성할 정도가 아닌 성희롱 문제를 가지고도 피해자가 대학을 상대로 일반 법원에 소송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성희롱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쟁점은 성희롱이 제도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이 중첩된 것임을 밝히는데 있었다. 탠그리외(Tangri et al., 1982)는 성희롱을 설명하는 세 모델 중 어느 것이 가장 실태조사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들은 남성이 강한 성적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자연/생물학적 모델, 조직 내 위계적 기회구조의 결과로 보는 조직모델, 사회 전체가 성별에 따라 권력과 지위가 차등적으로 배분된 결과로 보는 사회문화모델 중에서 성희롱이 심한 유형일수록 사회문화모델이 설명력이 있고 경미할수록 자연/생물학적 모델이 더 설명력이 있는 경향성을 보이나 세 모델 모두 주도적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성희롱이 남성지배의 기제인 것은 맞지만 남성지배가 유지되는 것은 정치경제적 영역의 지배뿐 아니라 남녀상호작용의 패턴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위 모델들은 그 패턴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텍(Gutek, 1985: 15-16)은 “성역할 번짐효과(sex-role spillover)”의 개념을 통해 탠그리외가 제기한 문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성역할 번짐효과”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성역할을 조직에까지 가져와서 조직 내 여성의 행위와 태도에 순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부

장적 권력이 제도 권력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시기 연구결과들의 주요 특징은 성희롱이 무엇보다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것임을 밝혀냈다는데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42%)뿐 아니라 남성(9%)도 성희롱을 경험하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달라서, 여성(62%)은 모든 종류의 성적 언행에 모욕을 느끼는 반면, 남성(67%)은 추켜세움을 느끼며(Gutek, 1985: 46-56), 남성은 성희롱 문제로 직장을 떠나지 않지만, 1979년-1983년 사이의 81건의 성희롱 사례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여성피해자의 반수가 해고되었고, 1/4은 불안과 혼란으로 스스로 직장을 떠났으며, 남아있는 여성 역시 생산성, 직업만족도, 자신감이 모두 감소되고 남성동료와의 연결을 꺼리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Coles, 1986: 89).

한편 대학내 성희롱 문제에 초점을 맞춘 팔루디(Paludi, 1990)는 성희롱을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한 후, 그 권력은 교수 신분의 공식 권력과 남성 신분의 비공식 권력으로 이루어져있고 반드시 중첩될 필요가 없다고 봄으로써 성희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피츠제럴드(Fitzgerald, 1990) 역시 성희롱을 위계적 관계 여부를 떠나서 성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언행을 통해 도구적 관계를 성애화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희롱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전혀 성적인 함의가 없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젠더 희롱'(gender harassment)으로 정의하고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의 대표적인 예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내 성희롱을 포괄적으로 보는 입장이 실제로 199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반영되고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도 법적규제의 대상이 되자 성희롱의 개념과 규제범위에 대한 반격이 일게 되었다(Thomas and Kitzinger, 1997). 반격의 핵심은 포괄적인 성희롱 규제는 대학을 감시사회로 만들므로, 성희롱 규제는 제도적 권력의 남용이 중첩된 조건형 성희롱에 국한해야 하며(Gallop, 1997; Patai,

1998; Rophie, 1994), “원하지 않는”의 개념의 모호함이 성희롱 규제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므로 개념에서 “원하지 않는”을 빼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행위 중심의 개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Booker, 1998). 이와 함께 성희롱을 제도 권력과 관계없이 가부장적 권력의 남용으로만 좁혀서 (혹은 넓혀서) 성폭력의 연장선상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Crosthwaite and Priest, 1996)에 대해서는 성 관계와 성희롱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편협한 관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Landau, 1999). 이 과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성찰이 필요하며 좀 더 정교한 이론과 효과적인 실천을 개발해야 한다는 반성도 제기되었다(Thomas and Kitzinger, 1997: 16). 그러나 피츠제랄드외(Fitzgerald et al., 1995: 133-135)는 성희롱을 신고한 여성들이 겪는 절대적인 피해를 고려해볼 때 실제 상황에서 여성들이 신고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견디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쓰는 것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을 피해자의 ‘행위’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지’ 중심으로 규명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행위자가 어떻게 자신의 행위가 환영받았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입증해야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역시 제도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의 남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부장적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로는 여성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의 연속선상에 성희롱을 위치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심영희, 1989). 이성은(2003)은 여기서 더 나아가 특히 한국사회의 섹슈얼리티 체계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의 이성애제도인 결혼제도와 조직의 성/젠더 문화의 결합이 성희롱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섹슈얼리티 체계

는 결혼제도를 매개로하여 구조화되기 때문에 미혼여성에게는 순결을 기대하고 기혼여성에게는 무성성을 기대하게 되는데,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 같은 사회적 기대와 현실 때문에 부정적 평판을 두려워하여 여성은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도 권력으로서 조직 내 여성의 주변적 지위와 IMF 이후의 불안해진 신분, 그리고 조직의 술문화가 여성을 성적 대상의 위치에 있게 만든다고 보았다. 반면에 대학내 교수성희롱을 교수권력의 측면에서 분석한 조은(2003)은 한국의 교수사회가 누리는 상징권력과 그 권력을 철저히 지키려는 동업자 문화, 교수, 경찰, 검찰,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제도 권력의 남성중심성, 그리고 피해 여학생과 같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행위자 교수와 같은 교수인 여교수의 모순적 위치가 한국사회 대학내 교수성희롱을 특정한 방식으로 축소, 은폐시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연구가 제도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혹은 행위자 집단의 구조적 권력의 측면에서 성희롱을 설명하고 있다면, 변혜정(2008)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희롱'의 의미를 재구성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법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성희롱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성희롱은 일상의 관계들이 가부장제적 성규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희롱을 거부하기도, 지적하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행위자, 피해자, 판단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희롱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일상의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성혁외(2007) 역시 명백한 성희롱 행위와 비성희롱 행위 사이에 성별 공통 인식이 부재하는 성희롱 모호영역이 폭넓게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유형과 범주로 성희롱을 규정하기 어려우며 행위자, 피해자, 공동체 모두가 문제해결과정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회복적 사법’의 대응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구와 한국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이 권력의 남용이라는 점과 제도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이 중첩된 조건형 성희롱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의가 형성되어있으나, 가부장적 권력으로만 넓혀서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나 “피해자 관점”의 실천적 기준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 영역이며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대학내 성희롱의 핵심인 조건형 성희롱 유형에 초점을 맞춰 제도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대학내 구성원들인 성희롱 행위자,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판단자가 구성하는 일상의 권력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성희롱이 어떻게 학내 성차별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왜 ‘피해자’의 인식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0년~2003년 사이에 발생한 대학내 교수성희롱 사건 중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수성희롱이 대학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이 사례들이 모두 성폭력범죄요건인 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어 형사소송을 거쳤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사건이 진행되어 교수성희롱의 성차별적 특징을 비교적 잘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의 경우 선행연구들뿐 아니라 사건의 형사재판 공판기록물과 언론보도자료,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각종 유인물과 같은 연성자료들도 참조했다. 심층면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첫 유형은 사건 관련자들과의 면접이다. 면접 대상자는 사례1부터 사례11까지 총 11명으로, 피해학생(1명), 학생대책위원회 학생(3명), 조사/징계위원회 교수(3명), 상담교수(1명), 학과 교수(1명), 변호사(1명), 여성운동단체 상담원(1명)이었다. 이들은 대학내 교수성희롱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둘째 유형은 사례12부터 사례14까지로, 세 대학 사례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교수성희롱에 대한 교수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했다(〈표 1〉참조). 개인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한 내용, 사건을 보는 관점, 그리고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유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집단면접은 교수성희롱의 문제점과 예방방안에 대해 대학의 구조와 문화를 배경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면접은 2003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됐으며, 면접장소는 집단면접의 경우 대학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고(2사례), 개인면접의 경우 면접대상자의 연구실이나 사무실(7명), 면접대상자의 자택(1명), 대학내 학생휴게실(1명), 시내의 커피숍(1명)이 이용되었으며, 전화면접(1명)도 병행되었다. 면접내용은 사례 3, 4, 5의 경우엔 면접 후 정리하는 형식으로, 그 외에는 모두 녹음되었다. 면접은 각 1회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진행되었다. 녹음자료는 모두 채록됐고 그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메일로 후속 질문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표 1〉 면접 대상자의 직위와 역할

사례	직위	역할
1	교수	A대학 징계위원회 위원
2	학생	A대학 학생대책위원회 위원장
3	변호사	A대학 역고소사건의 피고단체 측 변호사
4	여성운동단체 상담원	A대학 피해자 상담
5	교수	B대학 학과 교수 (전화면접)
6	학생	B대학 학생대책위원회 위원
7	교수	C대학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8	교수	C대학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9	상담교수	C대학 상담소 전문상담교수
10	학생	C대학 여성위원회 위원장
11	피해자 여학생	C대학 교수성희롱 피해자 여학생
12	상담교수	D대학 상담소 전문상담교수
13	여교수 집단면접	E대학 여교수 7명
14	남교수 집단면접	E대학 남교수 7명

참고: 면접대상자의 익명성을 위해 대학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ABCDE 대학 모두 남녀공학임.

면접자료는 연구자와 면접대상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면접과정에서 연구자는 면접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들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들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데 주위를 기울임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이 주도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점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된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현상의 객관적 실재를 포획하려는데 있기 보다는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는데 있고, 이때 연구자의 성찰성은 질적 연구의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이다(Denzin and Lincoln, 2003: 8-13; Maxwell, 1996: 86-91).

질적 연구에서 해석의 정당성은 연구자의 관점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성실함(integrity)의 결과로 얻어진다.

4. 교수성희롱 사건의 전개 과정

1) 발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 여학생은 혼란, 분노, 모멸감을 느끼지만 이들의 대처방안이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대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부, 2002), 통상 성희롱에 대한 반응은 참거나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다수이고(69.1%), 성희롱 상담창구에 신고하는 경우는(0.6%) 거의 전무하다. 특히 차등적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수성희롱의 경우에 피해자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왜냐하면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피해자인 여성만 손해 본다(60%)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간혹 교수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피해자 여학생이 있을 경우에 이들은 학내 상담창구를 통하기보다는 행위자 교수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학내 상담창구가 피해자 여학생을 보호·지원해 줄 체제를 갖춘 조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이 직접 만날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불신과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게 된다.

처음에 그 일 있고나서 항의하러 당여학우하고 피해자 남자친구하고 두 명이 찾아갔을 때 교수님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네가 그렇게 불쾌하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사실 문제가 이렇게 커질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같이 갔는데 'A+ 줄테니까 무마하자' 또 피해자 진술로는 '너도 얼굴 게슴츠레 뜨고 너도 좋아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진거죠(사례 2).

통상 피해자 여학생이 문제를 “직접” 행위자 교수와 해결하려고 할 때 피해자 여학생은 먼저 친구나 선배 혹은 과대표와 이 문제를 상의하고 피해자 여학생과 행위자 교수 간의 문제해결 과정을 지켜볼 제3의 판단자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3의 판단자는 그가 학생이든, 과대표든, 학과장이든 간에 사건을 공식화시키는 존재이고, 따라서 행위자 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의 요구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든지 사과의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본인이 성희롱 행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사과의 글을 올린다는 게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그건 어렵 습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희롱을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의도를 떠나서라도 일단 강하게 부정하게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례 14).

따라서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에 대한 교수의 대응이 부인, 회피, 위협으로 맴도는 사이, 대학 안에 이 문제를 집행력 있게 처리해줄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은 심화되고 사건은 곧 학생들 사이에 게시판 공개로 확대되거나(사례2, 사례6) 학과장에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B대학 성희롱 피해자 여학생) 초기의 사과요구는 해임요구로 그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전해들은 바로는 ○○과 학생들은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되고 정말 그렇게 원했는데 과정에서 교수가 입장을 여러 번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임을 요구하게 된 거였거든요(사례 6).

나는 처음 2000년7월29일에 한국으로 메일을 보냈을 때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K교수는 사건당시 나에게 자신이 15년 동안 교수로서 열심히 해 왔고 학생들에게 신용도 받고 앞으로 더욱 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계속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변명만 계속해 더 심한 상처를 준 K교수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화를 나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어야 할 일인지, 교수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나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가 기억을 못할 만큼 술에 취해 학생을 성추행하면 그 교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B대학 성희롱 피해자 여학생, 자료: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2002)

이렇게 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판단자로서의 상담창구가 작동하지 못할 때, 당사자들 간의 해결 노력은 오히려 행위자, 피해자, 판단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건은 이제 대학 공공의 장으로 옮겨가게 된다.

2) 조사과정

사건이 공개되고 대학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의 원칙’이 수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사과정은 크게 달라진다. 성희롱이 특성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피해자중심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오히려 조사과정은 피해자 여학생을 심문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1차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데 남자교수들만 일곱 명 앉아 가지고... 도저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분들이 다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가해자 가족을 생각해봐라 교수가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2차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변호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만한 말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저한테 묻는 게 교수가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몇 잔을 마셨느냐…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교수 건강상태가 어땠느냐. 교수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술 몇 잔에, 얼마 안 마셨지만 빨리 필름이 끊겼고 기억을 못 한다… 또 다른 남자교수님은 저보고 거기 있었던 남학생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느냐… 교수가 앞에 있는 남학생하고 계속 손잡게 하고 결혼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랑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건가 싶은 게, 질문을 해 놓고 (행위자) 교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대답이 나오면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진상규명위원회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담배 피러 나가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자교수님들이 제지를 해 주셨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고요(사례 11).

사례 11은 2차에 걸쳐 성희롱 진상규명위원회에 나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경험은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행위자 교수를 가해하는 가해자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었다. 조사위원인 남자교수들은 피해자 여학생의 문제제기가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설득하거나 피해자 여학생 자신의 행실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찾아내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것은 특히 위원회가 남자교수 중심으로 구성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향이다. 위원회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개인교수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여론을 거슬러 개인 의견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건이 학내에 공론화되고 대학본부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갈등은 행위자 교수와 피해자 여학생 뿐 아니라 학내구성원들에게로도 확산된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학생과 교수 사이에, 그리고 교수들 사이에 번지는 갈등의 중심에 학과중심주의가 작동한다. 학과중심주의의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교수와의 위계적 권력

관계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철저히 교수 편에 서는 교수들의 “동업자 문화”가 결합했기 때문이다(조은, 2003). “동업자 문화”는 학과교수들이 행위자 교수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의 교수들이 학과교수들 전체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로 강력하다(사례 5). 또한 피해자 여학생이 타과 학생일 경우에 행위자 교수 소속 학과 학생들과 피해자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예를 들면, 총학) 간에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기도 한다.

(행위자 교수) 해당학과 학생들을 피해자 대책위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 각서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학생들 머리에서 그런 각서가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각서를 찍고 만났는데, 저는 그 후배들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고 그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그쪽에서는) 조작 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사례 2).

반면에 피해자 여학생이 행위자 교수 소속 학과의 학생일 때, 그리고 학과 교수들이 행위자 교수를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교수와 긴밀한 위계적 권력관계에 놓여있는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 여학생을 오히려 비난하는 분위기를 학과에 형성시킨다.

○○과 내에서 압력은 말도 못해요. 수업시간에 누가 그러느냐는 식의 은근한 압박도 있었어요. 조교실 내에서 압박은 되게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모든 ○○과 대학원생들은 겉으로는 그 선생님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사건이 그렇게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기 전까지는요. 학교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과 사무실은 다 학생이 잘못이라는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사례 10).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주요 원인은 교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교수-학생간의 권력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성적, 대학원 진학, 논문지도, 유학, 취업 같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는 현실이 놓여있다. 따라서 행위자 교수와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학과 교수들이 행위자 교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해질 때, 학과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과 학생들이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된다.

중인들의 대부분이 대학원생들인데... 자기네들의 이름이 정계위원회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었죠. 그런 것들이 학과 내에서의 프레스가 상당히 크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과문을, 어떤 입장표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산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선생님들이 피해자(행위자 교수)도 교수진의 일동인데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회의에 피해자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사례 7).

그러나 다른 한편, 교수-학생의 권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밝히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과정에서의 행위자 교수의 처신은 위선과 비굴함으로 비추이고 그에 따라 교수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간다.

교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죽을죄를 졌다 그러는데 말은 뉘를 못하겠어요. 교수가 (제) 앞에서는 사과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런 사건이 대학원 밖에 나가면 우리가 BK 심사 받는데 힘들고 하고 말하기 때문에 서명했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와가지고 서명 지워달라고 하고...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서명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메일에 “사실이지만” 이 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됐거든요. 교수가 앞에서는 괜찮지 않느냐 학과장도 괜찮냐 그러면서 뒤로는 그 짓을 하니깐 못 믿죠(사례 11).

그 교수님이 증인이 될 만한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전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언서류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학부생들 한테도요. 그때 같이 답사 갔던 모든 학부생들과 어떻게 전화번호 아셨는지 다 거셨어요. 저한테는 뭐 자세히 말 안했지만 자기는 뭐 그런 적 없다, 실수했다, 자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헐박까지요. 앞으로 니 잘 봐주겠다. 그거 헐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증언서를 써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갔을 때는 증언서를 안 써주겠다 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알고 보면 전화했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사례 10).

사례 11은 피해자로서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교수가 자신에게 하는 말과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것을 경험했고, 사례 10은 판단자로서 행위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증언을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이들은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부정하는 행위자 교수와 또 그 교수를 지원하는 다른 교수들을 보면서 “교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깊어지게 되는데, 이 같은 반응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에게로도 확대된다. 그리고 다시 교수들 사이에 실망과 불신과 갈등이 확산된다.

신고를 하게 되면,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꾸려져요. 그 멤버들이 교수 삼인, 학생 삼인, 상담대표, 상담실장 이렇게 들어가서 조사를 해요. 제가 녹음을 해서 다 풀어서 증언서 다 옮기고 녹음한 거 다 같이 듣고 정황에 대해서 좀 해보고... 그때 정황에 있었던 목격자들 증언을 조사 해서 진술서를 다 받았어요. 싸인 다 받고 그때 필요한 지도도 다 만 들고, 정황적으로 다 한 다음에 대책위에서 (행위자) 교수님 불러서 물었죠. 황설수설하고 그러셨어요.

(연구자: 그 정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얘기하기가 쉬웠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맥이 빠지잖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많아요.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하고. 교수님들 밥통은 철가방이냐(사례 9).

성희롱 사건이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 때부터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딱 갈려지더라고요. 정말 배반감을 느낄 정도로. 어, 나는 이 친구하고는 멀리 갈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난점들은 아니다 결국은 그거보다 상위의 평가기준이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사례 7).

사례 9는 학내 성희롱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전문상담교수다. 사례 9는 사건에 관한 모든 정황과 증언과 자료를 모아 완성한 후 행위자 교수를 만났는데도 행위자 교수로부터 사건을 시인하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또한 사례 7은 학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과정에서 대학시절부터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동료교수와 “배반감을 느낄 정도로” 입장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 반면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건을 알고 있지 않는 일반 교수들의 경우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인식은 더 냉소적이다. 교수들 사이에는 대학 본부가 긴급히 구성한 조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있다. 일반교수들은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의 본질이 규명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대신 교수들 간의 알력과 대학의 정치적 입지 등이 조사과정과 결정에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났으면 내부 포인트를 알면 지금 저게 또 어떤 맥락에서 저게 치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건의 본질로, 성희롱 사건의 본질로 절대로 해석을 안 하고 저게 뒤에 힘의 어떤 것이 저걸 하는구나. 다 복선으로 해석해요(사례 13).

한편, 전반적으로 대학내 성희롱사건 조사과정에 대한 교수사회의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황에서도 각 대학은 성희롱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차이를 보이게 한 중요한 요인이 사건에 대해 해당대학 여교수들의 입장표명이 있었는가의 여부였다. 사례 대학 중 A대학은 여교수들의 집단적 대응이 전혀 없었고, B대학은

여교수 모임이 입장에 따라 양분되었으며, C대학은 여교수들이 단합하여 집단적 대응을 함으로써 사건해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여교수협의회가 교수협의회와의 관계를 조금 재정립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교수협의회와 탈퇴를 여교수들이 고려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여교수들이 탈퇴를 했어요. 성폭력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여러 입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이제 우리가 탈퇴하는 걸로 그거를 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협의회장에게도 보내고(사례 7).

사례 7은 학내 성희롱사건 조사과정에서 교수협의회가 사건을 무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여교수들이 독자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C대학에는 친목 단체로 여교수 모임이 있었는데 사건을 계기로 이 모임은 여교수협의회로 공식화되었고, 이들은 교수협의회를 탈퇴한 후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여교수협의회만의 독자적 목소리를 본부에 전달하여 사건에 대해 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C대학이 이런 차이를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아서 여교수들이 집단을 형성하기 쉬웠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여교수간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선임 여교수들의 성평등 의식이 분명해서 여교수모임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3) 징계

성희롱 규정안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집행력있는 기구가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이 “터지자” 화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경우, 교수들은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며 조사위гада출해 낸 결과를 그것이 징계이든 아니든 신뢰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들은 핵심 보직교수의 판단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일단 학교에서는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감시들,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아무튼 속된 말로 묻으려 하는 게 강해요. 특히 본부에서는 보직을 하시는 분일수록 그게 더 강해요... (사례 14).

그러나 대학에 성희롱 규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학내 성평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있을 경우, 교수성희롱은 대학제도 안에서도 규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대학의 장인 총장이 학내 성평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K교수가 안식년을 끝내고 왔을 때에 다시금 안식년을 신청했을 때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가 인사위원회잖아요. 다시금 특별 휴식을 요구했을 때 그걸 리젝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의견을 만들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물론 혼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자문교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비전을 가졌던 총장이 있었는데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총장 때에 여성자문교수의 자리가 만들어졌죠. 여성자문교수의 역할은 총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사례 7).

K교수는 1차 성희롱 사건 때 안식년을 가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했었는데, 안식년을 다녀온 후 피해자 여학생에게 2차 성희롱을 한 것으로 사건이 다시 점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K교수는 다시 안식년을 신청하여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C대학에 신설된 “여성자문교수”의 역할로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C대학은 총장 직속으로 학내 성평등 관련 시안들을 자문하는 여성자문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4) 사건 후 피해자 여학생의 생활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피해자 여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가? 피해자 여학생은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된다. 주변의 시선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피가 마르는 전쟁”이 된다.

휴학하거나 자퇴하거나... 학내에 일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못 돌아와요.

(연구자: 성추행 당한 여학생이 사건이 공론화된건 안 되건 간에 대부분 학교를 떠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제가 알기론 거의 그래요. 못 견뎌요. 지금... 진술서 봤을 때 학우들이 얘기를 안 써주는 거예요. 교수랑 연결되는 일이나 그 교수한테 찍힐까봐... 진술서에 대한 증인서류가 함께 학교에 올라가니깐... 피해자인 학우들이 가해자에게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학생들은 생존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느끼기엔 특히 남자애들이 등 돌리는 거. 분명히 그 시점에서 봤는데 안 봤다고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애들이 수군수군하는 거. 누구니 개? 예쁘니? 개가 꼬리쳤겠지 얘기 한다던가... 뜬금없이... 주변에 이는 애들이 괜히 우려한다는 걸 걱정의 눈초리를 보낸다거나 상처를 받고. 자기는 이미 흠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각인이 되는 거죠. 이게 24시간 내내 학교 공개에서 같이 따라 붙는 거죠. 내가 좋아했던 학교였는데 그 캠퍼스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건 정말 엄청난 그건 거 같아요. 남자친구들하고 깨지고 내 삶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가해자는 떠나고 물론 밥줄이 끊기는 게 있겠지만 피해자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피가 마르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폭력이에요(사례 9).

특히 학과 교수들과 학과 남학생들이 행위자 교수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여학생에게 압력을 가하고 배제시킬 때, 피해자 여학생이 교수와 학우들과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여학생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며 학교생활은 위축되어 휴학하거나 대학을 떠나게 된다.

개강하고 첫 수업하고 그 다음날 그 교수랑 친한 교수가 저를 불렀죠. 내가 내 수업에 들어오면 내가 불편하지 않겠냐. 피해자가 처절한 심정으로 앉아 있으면 내가 불편하지 않겠냐 그 말을 세 번 반복했어요. 교수를 용서하고 화해해라. 피해자가 먼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를 이해하라. 가해자의 가족을 생각하라... 그 교수는 이제 세상에 다 알려져 학회 활동도 위축되어 있고 그만큼 피해를 봤으면 되지 않겠냐... 울먹울먹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가해자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저 때문에 고통 받는 제 엄마 아버지는요? 선생님 저는 졸업할 수 있을지, 졸업한다면 제 전공분야에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을 피해는요?(사례 11).

사례 11은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신체적으로도 약해져서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한 상황이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행위자 교수와 맞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피해자 여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학과에서 행위자 교수와 함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게다가 전공필수과목제도, 지도교수제,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교과과정과 학과단위의 운영체제 안에서 행위자 교수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여학생의 학교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5) 사건 후 대학구성원들의 태도

성희롱 관련법 제정 이후 교수성희롱이 법정소송을 거치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학구성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성희롱이 남교수와

여학생의 왜곡된 관계를 점검하는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남교수와 여학생의 관계 자체가 “문제적”이게 된 것이다.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남교수와 여학생의 관계가 어떤 문화규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대학의 상황에서 대학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확대시키기 쉽다. 먼저 남교수들은 여학생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어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거나 여학생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학생들이 연구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오는 경우에 남학생이 혼자 찾아왔을 때, 여학생이 혼자 찾아왔을 때, 아무래도 제가 대하는 게 다르죠. 남학생이 오면 “앉아라” 그리고 “음료수 네가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묻고 그것이 가능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사안이라면 선 채로... 돌려보내는...(사례 14).

말하자면 문제가 될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도에서 여학생과는 거리를 두거나 가능하다면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여학생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래 사례 14) 대학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기도 한다(사례 9).

(여학생들이) 교수가 만지고 툭툭치는 것에 대해 여학생이 그걸 기분 나빠 안 해요. 특히요 젊은 선생이 그러는 거는 표현하기 뭣하지만 별로 기분 나빠 안 해요. 나이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속된 말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변태적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요(사례 14).

이런 걸 얘기하면 교수님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러시죠. 이제부터 아이들 상담할 때 문열어놓고 해야겠다라든지 감정적으로 발언하시고. 그런 사실은 문혀있는 건데...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우

리가 성이라는 공간으로 다 망가뜨린다 피해의식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교수 간담회를 열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진보적 교수님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데 토론자로 참석해주십시오… 나는 입장이 안 서 있다, 나는 거기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안 하시네요… 남자교수들이 그런 거 같아요. 생존권과 딱 걸리면 진실의 문제와 상관없고 무조건 싸워야 하고(사례 9).

사례 9는 “진보적인” 교수들이 성희롱에 대해 태도표명을 유보하는 것을 보며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것”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성별에 따른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성희롱 문제는 대학내 구성원들에게 성별 간에 넘을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6) 사건 후 대책마련의 쟁점들

많은 대학들이 성희롱 관련 규정안(학칙)을 제정했지만 그 규정안이 실질적인 집행력이 있는 방식으로 마련된 경우는 드물다. 규정안에 사건처리 기간의 명시,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직위별 반영의 구체화, 각 대학 조직의 특징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이 있는 조사위원장의 임명, 상담소와 상담교수의 배치가 명시되어 있는가에 따라 처리과정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C대학은 두 번의 교수성희롱 사건을 겪는 과정 중에 성희롱 학칙을 정비하고 상담전문교수를 영입하고 상담실을 개소함으로써,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 경우이다. C대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대학의 장인 총장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

총장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위의 어떤 구성이나 그런 것, 그리고 특히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총장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총장의 입장

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분명했던 거 같아요. 교수의 권위나 이런 것으로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을... 또 학칙(“규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위를 당연히 소집해야 된다고. 문안이 있으니까 부총장도 그 학칙에 따라서 대책위를 구성한거죠(사례 7).

같은 맥락에서 대학내 관련기구인 성폭력상담소가 실제로 집행력이 있어야 학생들이 대학의 대책에 신뢰를 보일 수 있다. 조사위원장이 교내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이게 되고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여러 주변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위원회를 막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는 성폭력상담소가 아직 개소가 안됐고 여학생실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실에서 성폭력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이죠. 상담실이 피해자의 입장이나 그런 걸 많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담실장의 발언권이 다른 학생처장의 발언권만큼 강하지가 않은데 가능할지 걱정이 되고요. 여학생실에 실제 사건에 대한 상담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사례 6).

한편, 성희롱의 규제 범위와 수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성희롱 상담전문교수들은 대학내 성희롱을 규제 위주로 강화시키는 것이 유연하지 않으며 대학내 성평등 문화 실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조건형 성희롱을 규제하는 과정도 반발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강하게 강의평가 내용에 (성희롱 피해 여부를) 넣어라 한다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교수의 개인적인 시각들을 인지를 주고, 관리자 교육으로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을 해요(사례 12).

성폭력 성희롱 개념하고 개인적인 인터랙션 그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는 거라서. 볼 꼬집는 것을 성희롱이니까 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유연하지 않은 거라서 오히려 저희가 문제를 풀어내는데 있어서 역효과를 보는 부분인 것 같고...(사례 9).

상담교수의 자격으로 대학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례 12와 사례 9는 대학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일방적인 법적 강제에 의한 규제 위주의 접근보다는 대학내에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구성원들 사이에 성희롱의 성차별적 성격을 인지하는 의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5. 맺으면서

지금까지 대학내 성희롱에 대한 서구와 한국의 법적,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후,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내에서 성희롱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서구의 경우에 대학내 성희롱은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나뉘며 성희롱 규제의 역사는 제도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이 중첩된 조건형 성희롱에 대한 규제에서 시작하여 가부장적 권력의 산물인 환경형 성희롱까지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성희롱은 대학내 차별금지의 맥락에서 규제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책임지는 대학내 성차별을 금지할 책임이 있는 대학에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 성희롱은 1999년의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5년의 '여성발전기본

법'을 근거로 대학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성희롱이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학내 차별을 막아야 할 대학이 책임의 주체로서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까지 나아간 경우는 없었다. 선행연구들은 성희롱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미에서 가부장적 권력의 산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내 위계적 권력관계와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이 대학내 성희롱을 특정한 방식으로 왜곡시킨다고 보았다. 특히 가부장제적 성규범이 일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의 경험을 지적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글에서 다뤄진 세 대학 사례는 성희롱 유형 중에 성폭력범죄 요건인 강제추행이 포함된 것으로서 가장 명백하게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조건형 교수성희롱의 경우였다.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후 사건의 처리과정은 왜곡과 은폐, 축소와 구조적 시도에 직면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학의 학과중심주의, 교수와 학생간의 위계적 권력관계, 그리고 교수들의 '동업자 문화'가 작용하였다. 교수 성희롱은 '술김의 실수'로 축소되어 피해자인 학생에게 "학생이 교수를 용서해줘야 한다"는 압력을 줌으로써 피해자 학생을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로 전환시키거나, "학과의 위상"이 (혹은 대학의 위상이) 추락되면 구성원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논리로 은폐되거나, 피해자 학생도 원했다 혹은 학생이 내용을 조작했다는 논리로 왜곡되어갔다.

반면에 교수성희롱을 묻어버리지 않고 공개한 피해자 여학생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신을 경원시하는 학과의 학우들과 선배들, 소외시키는 교수들, 게시판공개로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자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데 대한 충격과 혼란스러움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며, 학과단위로 이

루어지는 대학생활에서 위축된 생활을 하거나, 휴학하거나, 혹은 대학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여성구성원들이 성희롱을 신고하면 여성만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리하여 성희롱을 참고 수용하거나 은폐해버리는 행위 속에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각인되며 그렇게 대학의 성별위계구조는 지속되게 된다.

“피해자 관점”의 수용은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다. ‘피해자의 관점’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 여성은 통상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남성보다 훨씬 더 위협을 감지한다.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를 위협으로 감지하는 것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거의 대부분 여성인 현실 때문이다.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성과 남성이 다르며 또 여성이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피해자 관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판단자의 입장에서도 성별에 따라 가장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희롱을 대학내 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식한다면, 먼저 대학 구성원들은 여학생이 가부장제적 성규범이 일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성희롱의 경험을 지적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이 놓여있는 조건을 이해한다면 피해자 관점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각 대학마다 성평등에 대

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사례는 대학내 성 평등에 대한 총장의 의지, 구체적이고 집행력 있는 규정안(학칙)의 제정, 전문 상담교수제의 도입, 여교수집단의 입장표명이 주요변수였음을 보여준다.

(원고접수: 2008. 11. 1. 게재확정: 2008. 12. 10)

참고문헌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2002), “침묵에서 외침으로: 성폭력은 이제 그만!”,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공동 기자 회견문(2002. 3. 15).
- 박성혁·하혜숙·김보명(2007),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7-위탁-14.
- 변혜정(2008),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pp.122-164.
- 서울고등법원(1995), “우조교 사건 항소심 판결문”, 94나15358(1995. 7. 25).
-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2003), “함께 가는 성, 더불어 사는 세상: 대학생을 위한 성희롱예방 지침”, 자료집.
- 성폭력추방운동에대한명예훼손역고소공동대책위원회(2002), “기자회견”, 발표문(2002.7.10).
- <http://www.womenlink.or.kr/archive/files/etc/kwau200207.hwp>
- 심영희(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5집, pp.122-164.

- 여성부(2001),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예방 가이드”,
- 여성부(2002), “교육기관(대학)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현대리서치연구소.
- 여성부(200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6915호(2003. 5. 29).
- 이성은(2003), “성희롱-이성애제도-조직문화 그 연관성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pp.201-244.
- 이재경·마경희(2002),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편), 『여성학논집』, 제19집, pp.1-14.
- 조순경(1995), “우조교 사건에 관한 의견서”, 94나15358.
- 조은(2003), “교수 성폭력은 왜 ‘올바른’ 해결이 어려운가?“, 전국여교수연합회·교육인적자원부 주최 2003년도 전국여교수연합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03. 5. 31).
- 조주현·장승옥·정현희(2003),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3-일-07.
- 한정자·김인순(2001),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편), 2001 연구보고서 250-1.
- Abrams, Kathryn(2001), “The Reasonable Woman: Sense and Sensibility in Sexual Harrassment Law”, pp.207-213 in L. LeMoncheck and J. P. Sterba(ed), *Sexual Harassment: Issues and Answ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oker, M. J.(1998), “Can Sexual Harassment Be Salvage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11), pp.1171-1177.
- Coles, Frances S.(1986), “Forced to Quit: Sexual Harassment Complaints and Agency Response”, *Sex Roles*, 14, pp.81-95.

- Crosthwaite, Jan and Graham Priest(1996),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4(1), pp.66-82.
- Denzin, Norman K. and Yvonna S Lincoln(2003),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N. K. Denzin and Y. S. Lincoln(ed), *Strategies of Qualitative Inquiry*, Thousand Oaks: Sage, pp.1-43.
- Farley, Lin(1978), *Sexual Shakedown: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on the Job*, New York: Warner Books.
- Fitzgerald, Louis(1990), "Sexual Harassment: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Michele A. Paludi(ed), *Ivory Power: Sexual Harassment on Campu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21-44.
- Fitzgerald, Louis F, Suzanne Swan, and Karla Fischer(1995), "Why Didn't She Just Report Him? The Psycholog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Women's Responses to Sexual Harassment",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51(1), pp.117-138.
- Gallop, Jane(1997), *Feminist Accused of Sexual Harassmen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Gutek, Barbara A.(1985), *Sex and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obson, Charles & Colleen Hobson(2002), *The Lecherous University: What Every Student & Parent Should Know About the Epidemic of Sexual Harassment on Campus*, Booklocker.com, Inc.
- MacKinnon, Catharine A.(1979),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 Women: A Case of Sex Discrim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well, Joseph A.(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Sage.
- Paludi, Michele A.(1990), *Ivory Power: Sexual Harassment on Campu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tai, Daphne(1998), *Heterophobia: Sexual Harassment and the Future of Feminism*, Lanham, MD; R&L Publisher.
- Rophie, Katie(1994), *The Morning After: Sex, Fear, and Feminism*,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Tangri, Sandra S. et al.,(1982), "Sexual Harassment at Work: Three Explanatory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pp.33-54.
- Thomas, A. M. and C. Kitzinger.(1997), "Introduction", A. M. Thomas and C. Kitzinger (ed), *Sexual Harassment: Contemporary Feminist Perspectives*, Buckingham and PA: Open University Press, pp.1-18.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2001), "Sexual Harassment Guidance", L. LeMoncheck and J. P. Sterba (ed), *Sexual Harassment: Issues and Answ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52-361.
- U.S. Supreme Court(2001), "Gebser et al. v. Lago Vista Independent School District(1998)", L. LeMoncheck and J. P. Sterba (ed), *Sexual Harassment: Issues and Answ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83-390.

〈Abstract〉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on Campus
and Its Characteristics of Sex Discrimination:
The Cases of Three Universities

Joo-Hyun Cho

This work attempts to analyze why sexual harassments by professors should be characterized as the sex discrimination rather than simple wrong/awkward sexual expressions, thereby, serving as the tools for the continuation of women's subordinate status on campu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rguments discussed in this work,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sexual harassment is a case of power abuse and there should be stronger regulations on the *Quid Pro Quo* harassment where the institutional and patriarchal powers are superimposed.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on whether the 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by extend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patriarchal power and/or whether the practical enforcement of "victim's standpoint" arguments should be adopted. This work examines how and in what contexts the institutional and patriarchal powers operate by focusing on the *Quid Pro Quo* harassment as the main issue of the sexual harassment on

campus.

The cases analyzed are the sexual harassments by professors occurred recently in three universities. Based on 14 in-depth interviews, including two group interviews, and related document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way the cases are deployed and experienced on campus. In the analysis of each stage of the deployment, this work tries to understand the ways those members involved construct the meaning of the sexual harassment by situating their experiences in the social contexts.

In these cases, though the victims of the sexual harassments suffer incessantly through the everyday life on campus, thus proving that these are the cases of sex discrimination, the department-centered “we-ness” and the unequal power relation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help to generate various prevarications at each stage that make those involved hard to identify the sexual harassments as sex discriminations. This work shows that when the gender equality on campus has not been established, sexual harassments are not recognized as relevant to sex discriminations and, as a consequence,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and/or strengthening of the present gender hierarchy.